

제400회국회
(정기회)

국 방 위 원 회 회 의 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2년9월19일(월)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이현승 의원 등 55인 발의)(의안번호 2117250)
2.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3.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4.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5.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
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6)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0)
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9)
9.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25)
10.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4)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6)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3)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2)
14.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8)
1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4)
1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3)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5)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3)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4)
2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7)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6)
2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9)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5)
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9)
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
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1)
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5)
2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6)
29.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9)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3)

3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3)
3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1)
3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1)
3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9)
35.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1)
3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2)
3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1)
3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4)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5)
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3)
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5)
4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4)
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1)
4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4)
4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1)
4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2)
4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9)
4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1)
49.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9)
5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5)
5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5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3)
53.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0)
54.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3)
5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8)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2)
5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9)
5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5)
5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0)
6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8)
6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5)
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7)
6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8)
6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8)
6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2)
6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0)
6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2)
6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9)
6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2)
70.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7)
7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4)

7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8)
7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5)
7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6)
7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9)
7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5)
7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7)
7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9)
79.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1)
80.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김민기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14224)
81. 정책질의
가. 합동참모본부 소관

상정된 안건

1.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이현승 의원 등 55인 발의)(의안번호 2117250) 5
2.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6
3.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7
4.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7
5.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 12
 - o 소위원장(김병주) 인사 12
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6) ... 13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0) 13
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9) 13
9.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25) 13
10.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4) ... 13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6) 13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3) ... 13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2) 13
14.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8) 13
1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4) 13
1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3) 13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5) 13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3) ... 13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4) 13
2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7) ... 13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6) 13
2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9) ... 13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5) 13
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9) ... 13
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 13
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1) 13

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5)	13
2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6)	13
29.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9)	13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3)	13
3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3)	13
3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1)	13
3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1) ..	13
3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9)	13
35.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1)	13
3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2)	13
3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1) ..	13
3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4)	13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5) ..	13
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3)	13
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5)	13
4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4934)	13
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1)	13
4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4) ..	13
4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1)	13
4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2)	14
4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9)	14
4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5211)	14
49.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9)	14
5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5)	14
5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14
5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3) ..	14
53.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0)	14
54.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5333)	14
5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8)	14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2)	14
5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9)	14
5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5)	14
5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0)	14
6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8) ..	14
6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5)	14
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7)	14
6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8)	14
6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8)	14
6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2)	14
6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0)	14

6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2)	14
6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9)	14
6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2)	14
70.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7) ...	14
7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4) ...	14
7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8)	14
7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6205)	14
7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6)	14
7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9)	14
7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5)	14
7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7) ...	14
7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116579)	14
79.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1) ...	14
80.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김민기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14224)	14
81. 정책질의	14
가. 합동참모본부 소관	

(09시33분 개의)

○위원장 **李憲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결의안과 2022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2시에 대정부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 드리기 위하여 국방위원회 개회 시간을 9시 30분으로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회의 시작 전에 국방위원회 회의가 종료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북한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선제 핵공격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핵무력 법제화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민족적 염원을 저버린 행위이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하고 중차대한 도발로 대한민국 국방위원장으로서 깊

은 유감과 강한 규탄의 뜻을 표합니다.

북한은 더 이상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기를 바라며 정부와 우리 군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이헌승 의원 등 55인 발의)(의안번호 2117250)

(09시35분)

○위원장 **李憲昇**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및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참고로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을 기념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이미 지난 8월에 미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국회에서도 미국 의회와 발맞추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본 결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방위원회에서 오늘 의결하는 것으로 간사위원 간의 협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본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55인이 공동발의한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09시36분)

○위원장 **李憲昇**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위원장이 간사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작성한 국정감사계획서(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간은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 대상은 국방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병무청, 방위사업청 등 4개의 중앙행정기관과 국방부 직할 부대·기관 및 소속기관 31개, 합동참모본부와 육·해·공군 본부 및 해병대사령부 등 이상 5개의 군 조직, 각군 본부 직할 부대 및 소속기관 21개, 한국국방연구원 등 5개의 공공기관,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인 군인공제회 등 모두 67개 기관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군의 전투태세 점검을 위해서 해군작전사령부, 공군작전사령부 등 9개 기관을 시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작년과 같이 국정감사 중 코로나19 방역조치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국정감사계획변경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할 수 있으므로 국정감사계획서의 변경은 별도의 위원회 의결 없이 위원장과 간사 협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 과거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을 때도 실제로 감사기관에 대해서 연합사를 넣을 것이냐 하는 논의를 상당히 심도 있게 했었습니다. 지금 연합사가 실제로 대한민국 전시작전계획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연합사도 이제는 우리가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논의

해야 되고, 최소한도 포함이 안 된다면 연합사 부사령관은 당연히 국방부 합동참모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한기호 위원님 의견 개진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여야 간사님과 다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간사님.

○김병주 위원 먼저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 연합사를 국정감사 기관에 포함시키는 의견을 주셨는데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도 법에 맞아야 되는데 제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당시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사는 법적으로는 국정감사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지시 2호로 탄생이 돼서 한미연합으로 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참고인 자격으로 국방위에 참석을 해서 연합사 관련된 내용을 질의응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그 당시 했었는데 이것은 양당, 신원식 위원님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저도 참고인으로 출석시키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국정감사계획서는 신원식 위원님하고 대략적으로 계획에 다 합의가 됐고 지금 증인하고 참고인 출석요구 명단이 합의가 안 됐습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제시한 증인·참고인 출석 내용을 보면서 저는 아주 놀랐고 조금 많은 우려와 또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출석 요구한 인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 기무사 계엄령 검토 등등 여러 가지 문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지금 출석 요구를 한 상태고 나머지 정의용, 김유근, 서훈, 송영무, 이석구 또 사실 국민의힘 안보문란 TF에서 고소·고발을 해 놔서 수사로 가고 있는데 이 대상자를 또 증인으로 한 것이지요. 이것은 증인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당에서는 국민적인 의혹과 국민적으로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대통령실 이전 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용현이라든가 신인호, 정재관 이런 인원을 불렀고 또 지금 안타깝게도 국민의힘 안보문란 TF에서 자꾸 옛날 기무사 문제도 정쟁으로 갖고 오기 때문

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곧 온다고 하니까 그런 인원이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 것인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인 대통령을 이렇게 증인으로 요구한 것 자체도 매우 대단히 유감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인 실질적으로 대통령실 이전에 관련된 관계자라든가 기무사 그것을 알고 싶으면 핵심이 조현천 전 사령관입니다. 전 사령관인데 그런 인원들을 채택을 해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병주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은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이고 나중에 안건 네 번째,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 있는데 그때 계속 논의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정감사계획서 채택부터 처리를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계획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과 같이 2022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09시42분)

○위원장 **李憲昇**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국정감사 계획에 따라서 감사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것과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서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와 관련한 서류제출 요구는 국회법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은 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으면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서류제출 요구를 위해서 추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의 세부적인 제출 요구 및 기한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

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서류제출요구서를 접수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09시44분)

○위원장 **李憲昇**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증인·참고인의 출석 요구는 먼저 기관증인으로 국방부장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 병무청장, 방위사업청장과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그리고 각 기관 및 부대 소속 주요 직위자를 해당 기관의 국정감사일에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만 10월 24일 종합감사에는 전 기관이 동시 수감하는 관계로 주요 기관증인만 출석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국정감사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로 인한 기관증인의 출석 요구 일시 변경은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기관증인의 출석이 제한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증인의 출석 요구는 별도의 위원회 의결 없이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에 따라 철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신 증인과 참고인 채택 여부를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병주 간사님께서 의견을 주셨고,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저도 오늘 와서 일반증인·참고인 요구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금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방위원회는 우리나라와 한반도 전체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고 절체절명의 상황을 관리하는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우리 국회의 기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여야도 없고 진보·보수를 떠나서 국가적 과제, 민족적 과제를 논의하고 임무가 있는 중요한 곳인데 여기를 이렇게 국정감사가 시작하기도 전에 정쟁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게 저는 굉장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한다는 지금이 상황이 과연 국방위원회의 현재 과제하고…… 정말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시겠는가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의견은 있을 수 있고 다를 수 있지만 바로 직전 대통령에 대해서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 역사상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말 말씀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참고인으로 우리 동료 국회의원도 요청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 국회가 국민들을 안심시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국민들의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국민들이 보시기에 ‘국회 참 걱정된다. 국회 왜 저러냐?’ 이런 소리가 나오게 우리 스스로 만들고 있지 않느냐 저는 자성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기대하고, 저는 우리부터 정말 국방위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규백 위원님.

○안규백 위원 안규백입니다.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을 이번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자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참으로 서글픕니다.

한기호 위원님, 우리가 전례적으로 국방위를 봤을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입니다. 국정감사의 본래 목적보다 당리당략에 따라서 마음대로 국감 증인을 채택하거나 또 철회한다는 것은 오만한 권력·권리 남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정부 여당에서 요새 최근 들어서 말하고 계시는 국격과 국가의 품위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깊이 생각해야 할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감이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기형적인 국감 증인제도의 채택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 국방위원회가 유일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국방위원회를 가장 오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개탄스럽고 저는 이것이 신원식 간사나 김병주 간사님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김병주 위원님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어찌 됐든 협상을 안 해야지 여기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아주 현명하시기 때문에 한 목적적 방향을 가지고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그 목적 달성에 부합하기 전에 절차와 과정과 여러 가지 여론도 상당히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후배들이 보고 또 우리 후세들이 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여기서 논의조차도 하지 말고 그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위원장 **李憲昇** 알겠습니다. 안규백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른 우리 위원님들 증인 채택 관련해서…… 신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원식 위원 국민의힘 간사 신원식 위원입니다.

물론 위원장님 말씀과 국방위 있기 전에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오늘 기관증인은 채택을 하고 일반증인 및 나머지 참고인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만 또 여러 민주당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수긍하는 점이 많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님을 비롯한 전임 안보실장이나 했던 분들은 지금 명백하게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탈북어민 강제북송, 기무사 문건 등으로 국민적인 관심이 되고 여러 가지 의문점이 되고 그래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현재 어디든지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나중에 따져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안보실장이나 그 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발 앞서서 국민들께, 입장을 한번 듣는 게 저는 오히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록 수사 대상이기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분들도 증인 채택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과연 전직 대통령을, 금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2017년 9월 달에 보면 당시 이명박·이동관 그래서 국정조사를 민주당에서 제기하셨어요. 그 당시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국감 증인 채택을 민주당에서도 이미 선례로 제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것을 했다 안 했다, 전에 있었다 없었다는 차원을 떠나 어떤 특정 직위를 했다고 해서 국민적 의혹이나 여러 가지 물을 게 있으면 성역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이시든 현직 대통령이시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드리고 또 증인으로 채택해서 여쭙보는 건 당연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지 이것은 저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으니까 김병주 위원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도록, 합의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께서 제 차원이 아니고 누가 있었지 않냐? 그것은 즉 다시 말해서 제가 누구 지시를 받아서 옮긴 게 아니냐 이런 뜻의 말은 속기록상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설사 대통령께서 저한테 그런 일을 하더라도 제가 맞지 않으면 하지 않을 사람입니다.

순수한 제 의견이었고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당 위원님들 의견을 여쭙봤습니다. 그러나 말제는 제가 스스로 먼저 했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요, 그것은 안규백 위원님이 오해가 없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 이전에 관련해서 이거야말로 저는 운영위 소관이 되었다, 이것을 묻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이분들이 전부 다 청와대 소속이었고, 신인호 처장도 이미 전직이긴 하지만 청와대 관련된 분이고 해서 민주당께서 꼭 증인으로 채택하려면 운영위 쪽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당에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말씀 길게 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김병주 위원하고 상세히 상의를 해서 다시 여러 위원님들에게 합의에 이르는 분만 증인과 기관이 채택될 수 있도록, 일방적으로 가지 않도록 충분히 간사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주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위원장 **李憲昇** 김병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요새 저는 국회의원이 돼서 저 스스로 아주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치 현상을 보면 정치가 실종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 특히 국회에서 옛날의 안보 사건을 가지고 다시 고소·고발을 해서 법의 잣대로 갖고 가는 것, 정치적으로 풀지 못하고, 그것이 바로 정치가 실종됐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요구하신 서훈부터 해서 정의용, 김유근, 송영무, 이석구 증인을 채택하는 방법은 저의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 안보문란 TF하고 국민의힘에서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정치공세를 하면서 고소·고발한 안보 관련 건을 다 취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취소를 하고 정치로 풀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취소하고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저희 당 국방위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받아 줄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 정치인들은 특히 국회는 정치로 풀려고 해야지 정치로 풀어 볼 생각을 한번도 안 하고 그것을 고소·고발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회의원 스스로 국회의원이기를 포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당이 스스로 당을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증인 채택 요구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2번부터 6번은 아주 잘했을 수도 있어요. 정치로 한번 풀어 보시지요, 고소·고발 다 취소하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 김병주 간사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치로 푸는 거 좋지요. 그런데 저도 고소·고발을 당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2심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 누가 했습니까? 민주당에

서 했지요.

우리가 통상 ‘내로남불’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는 안 하고 정치로 풀고 나서 얘기했다면 제가 뭐라고 안 해요. 그리고 송영무·이석구 제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송영무·이석구가 정치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위법을 했기 때문에 고발한 겁니다.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것을 가지고 고발했으면 제가 잘못됐지요. 그러나 위법을 했기 때문에 고발한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당의 지금 고발당한 사람들, 나경원 전 대표를 포함해서 많은 인원이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무총장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고소·고발을 해 놓고 너희 고소·고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내부에서 고소·고발한 사건을 한번 죽 훑어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고소·고발했는지.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국방위에서 그것을 가지고 논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설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설훈 위원** 돌아가는 내용이 국방위가 왜 이런 필요 이하의 행위를 가지고 논쟁해야 되는지 참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존경하는 신원식 위원께서 자신이 스스로 이것을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 말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지 며칠 안 됐는데 국방부 증인으로 참석을 해?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증인 신청했다?’,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국민의힘이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정치적 판단이 없나? 국민들이 그걸 잘했다고 그럴까?’ 이런 의문이 상식적으로 들지 않겠습니까? 너무도 간단한 판단입니다.

설혹 어디 외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라고 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방위원회 내에 있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그건 지나치다. 국민으로부터 되레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부를 했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여기 계신 여당 위원님들은 다 충분히 그런 판

단력과 그런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지금 국민의힘, 여당 내에 돌아가는 힘의 상황 아닌가?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이게 제대로 돌아가겠냐, 정치가 제대로 되겠냐, 국방이 제대로 되겠냐 이런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나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것이기 때문에 국방 위원으로 계신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걸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두 분의 내용으로만 한정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지나친, ‘이건 하지 마시다’라고 얘기했어야 마땅한 거지요. 여기 올라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느 개인이 판단을 잘못했다면 그건 개인 판단이겠지만 일단 위원회 증인으로 올라오게 되면 국민의힘 전체의 탓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 위로도 올라가서 여당 전체의 탓으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짓을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는 제어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원식 위원** 한 말씀만, 잠깐 간단하게……

○위원장 **李憲昇** 잠깐만, 계속 이거 공방을 하시면 안 되는데……

○**신원식 위원** 맞아요.

○위원장 **李憲昇** 그럼 정리 간단하게 해 주세요.

신원식 위원님.

○**신원식 위원** 위원님, 팩트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전직 대통령이든 어쨌든 여러 가지 국민이 의문을 가지거나 또는 위배, 오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나 성역이 없다는 점에서 똑같고요.

제가 내로남불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 채택을 한 예가 2013년 4대강, 그러니까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그해에 국감에 증인 채택을 환노위에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방송 장악에 관련해서도 증인 채택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논지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증인 채택할 만한 일이 아니라는 주장은 여야 공방이 되는데 전직 대통령을 증인 채택하는 것이 정말 금도를 넘은 것

이고 정치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팩트 위주로 보면 민주당에서 주장하신 대로 지금 이 시기에 국방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증인 채택하는 것이 굉장히 맞지 않다라는 것은 여야 간사를 통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가지고 마치 있을 수 없는 일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재고가 됐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설훈 위원** 전직 대통령 중에서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다 감옥 갔습니다. 그래서 증인 채택도 됐고 그리고 결과가 감옥까지 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동렬에 올리겠다? 국민들이 뭐라고 그러겠느냐는 말이에요. 제 초점은 국민들이 어떤 시각으로 이 문제를 볼 거냐 하는 겁니다.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李憲昇** 말씀 듣고 있는데 정성호 위원님 한 분만 대표를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정성호 위원** 정성호 위원입니다.

국방위원회에서 이런 게 자꾸 논의되고 또 여야 간의 연쟁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참 국민 앞에 부끄럽습니다. 저도 국회에 와서 운이 좋아서 재선 때 국토위원장, 3선 때 기재위원장, 4선 때 예결위원장 했습니다. 저는 위원장 하면서 여야 간사 간에 이런 안이 왔을 때 그러면 대부분 거기서 잘랐습니다. 이견 말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주장을 했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전직 대통령을 증인 요구했으니까 지금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과거에 너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 당이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국방위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여야 위원님들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첫 상건례 때 인사하면서 정말 외교·국방·안보에 여야가 없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방위에서의 어떤 대통령의 위상과 다른 데 정치 현안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의 대통령이

또 약간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 군의 최고 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군이 봤을 때 최고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에요. 정권이 바뀐 거지 나라가 바뀐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전직, 직전 군의 최고 통수권자를 갖다가 국방위에 증인으로 불러도 된다? 이 논의 된다는 거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 불안한 겁니다, 사실은요. 이런 논의 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상임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요. 그럼 국방위에서 우리가 맨날 국방 안보에 여야 없다고 그러면 뭐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시겠습니까?

저는 여야 간에도 이런 논쟁은 그만하시고요, 이게 뭐 여야 합의할 사항입니까? 이제 여기서 끝내시고요. 정말 우리가 국방위 본연의 업무에, 우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정말 여기 합참의장이 앉고 뒤에 군 장성들 앉아 있는데 이 모습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여야 위원님들 좀 자중하시고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논의 안 되게 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李憲昇**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한기호 위원** 아니, 지금 정성호 위원님 말씀 하셨으니까 말씀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저도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한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기호 위원** 정성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보에는 여야가 없지요. 그리고 군의 통수권자가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국방위원회에서 부르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가 안보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잘 하셨으면 부를겠습니까? 남북군사합의 한 날이 오늘입니다. 군사합의에 의해서 우리는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무장 해체되고 북한은 지금 핵무력에 대해서 이제 법제화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것 물어보겠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십니까?

○**정성호 위원** 아니, 그러면 계속 논쟁을 하셔야겠습니까, 지금?

○**한기호 위원** 그래서 여야 합의해서 증인 채택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절대로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 국민인데……

○정성호 위원 아니, 이런 논쟁 계속 하셔야겠어요, 그래서?

○한기호 위원 정성호 위원님만 그렇게 절대로 안 된다고 하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李憲昇 자, 한기호 위원님, 정리하시지요.

○정성호 위원 저는 이런 정도……

○한기호 위원 뭐가 안 됩니까, 안 되기는.

○정성호 위원 이런 정도 논쟁은요 사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할 사항입니까?

○위원장 李憲昇 한기호 위원님, 잠깐만.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기호 위원 뭐가 안 됩니까, 안 되기는!

○위원장 李憲昇 잠깐만요.

○안규백 위원 아니, 한 위원님.

○정성호 위원 위원님 생각만 다 옳다는 거예요, 지금?

○김병주 위원 양당 간사가 잘 협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규백 위원 잘 좀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李憲昇 잠깐만요. 지금 이때까지 논의되고 있는 거는 사실 여야 간사 간에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어떻게 이거 또 다 위원님들 테이블에 올라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이 안을 가지고 두 분이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요. 여기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두 분께서 좀 더 협의를 잘 해 주시고요. 그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예.

○김병주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시지요.

○위원장 李憲昇 일반증인하고 참고인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채택 여부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끼리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은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5.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

(10시06분)

○위원장 李憲昇 다음은 원래 의사일정 제5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할 차례이나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의사일정 제5항을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개선의 건으로 변경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현재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 2개의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 추가로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법률안, 결의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안건으로 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고 김병주 소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 정수를 7인에서 8인으로 변경을 하고 배진교 위원님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 간사 위원님들끼리 잘 협의를 해 주셨고 또 배진교 위원님께서 큰 결단을 내려 주셔 가지고 위원회 구성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을 개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 소위원장(김병주) 인사

(10시08분)

○위원장 李憲昇 그러면 법률안심사소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병주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김병주 위원입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오늘 구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일곱 분과 같이 법률안에 대해서 잘 심의해서 국방부가 정상적으로 또 강한 국방을 위해서 법으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6.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56)
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360)
8.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09)
9. 방위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25)
10.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4)
1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36)
1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443)
1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2)
14.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08)
1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74)
16.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593)
1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735)
1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태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3)
19.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14)
20.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877)
2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06)
22.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919)
23.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15)
2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49)
25.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64)

2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4071)
2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075)
28.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6)
29.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139)
3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33)
31.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283)
32.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11)
3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381)
3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59)
35.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1)
36.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62)
3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491)
3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34)
3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강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595)
40.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03)
4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645)
42.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34)
4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41)
44.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4964)
4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1)

46.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042)
4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189)
4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11)
49.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79)
50.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5)
51.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88)
5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설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293)
53.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00)
54.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국방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33)
55.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48)
5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진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392)
57.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09)
58.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535)
5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20)
6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658)
61. 방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5)
6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7)
63.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78)
6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788)
6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812)
66.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5960)

67.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22)
68.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089)
6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02)
70.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37)
71.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4)
72.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178)
73.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05)
7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296)
75.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409)
7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5)
77.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27)
78.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579)
79.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6641)
80.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촉구 결의안(김민기 의원 등 10인 발의)(의안번호 2114224)

○위원장 李憲昇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0항까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4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법률안과 결의안은 지난 회의 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던 안건들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 정책질의

가. 합동참모본부 소관

○위원장 李憲昇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정책질의를 상정합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존경하는 이현승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국방 위원님 여러분!

오늘 국방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책질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평소 우리 군과 합참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군은 한반도 안보 상황이 어느 때보다도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과 국민들께서 부여한 사명과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합참의장으로서 한반도와 역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만일 북한이 핵사용을 시도한다면 한미동맹과 우리 군의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북한 정권이 더 이상 생존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킬 것입니다. 또한 보다 완전성을 갖춘 연합·합동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안보환경을 고려한 연합작전계획을 발전시키고 연합연습과 연계한 연합 야외실기동훈련 확대 등 실질적 연합·합동훈련을 강화하여 더욱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방혁신 4.0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첨단 과학기술 강군을 건설하겠습니다. 미래의 합동전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핵심능력을 증강시키고 전방위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작전수행개념과 군구조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군은 창을 베고 적을 기다리는 침과대적의 자세로 항상 전투를 준비하며 반드시 승리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으며 주시는 고견을 겸허한 자세로 경청하고 앞으로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합참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李憲昇 김병주 위원님.

○김병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의사진행발언.

○김병주 위원 오늘 인사청문회 대신 합참의장 정책 현안질의를 하게 된 것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단 유감을 표합니다. 합참의장은 국방 개혁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직위입니다. 군의 제1선임장교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13명을 임명 강행했고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고 4명을 임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조차 거치지 않고 임명한 사례는 역대 보수·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주 안 좋은 역사이지요. 김승겸 합참의장도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사례입니다. 아주 불명예스럽게 임명이 되었습니다.

올 7월에 김승겸 합참의장을 임명할 시기를 보면 인사청문회 없이 급하게 임명할 사항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인철 합참의장이 지휘를 하고 있었고 원인철 합참의장은 22년 올해 9월까지 정상적으로 보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쁜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급하게 임명한 것은 우리 국회와 특히 국방위를 무시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를 대신해서 전체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은 심경이 아주 매우 복잡합니다. 오랜 군 경험으로 봤을 때 이미 합참의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합참의장에게 인사 검증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도덕성 검증을 위해서 사적인 문제를 질의해서 개인적인 어떤 흠집을 낸다면 합참의장이 영이 서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 민주당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인사 검증임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정책 검증으로 하자는 것이 공감대였습니다. 얼마나 난감합니까, 사실은 제대로 된 인사 검증을 못 한다는 것이.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은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에게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합참의장은 군의 제1선임장교입니다. 전군을 대표하는 직이지요. 오늘 합참의장은 그런 것을 고려해서 현안질의 할 때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만 대변하지 말고 군의 제일 선임자로서 당당하게 입장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병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방 김병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질의의 취지에 맞도록 위원님들께서는 합동참모본부에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질의는 질의 순서에 따라 하되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 의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의장님에게 확인하는 질문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 함정은 단계별로 북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유도탄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요격 유도탄은 현재는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임병헌 위원 우리 측 함정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다면 큰 걱정이 되는데 만일에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실제 핵·미사일을 쏘아 올린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이 아주 절실히 보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현재 요격 유도탄은 함정들 전력화와 연계해서 추진 중에 있고 또 함정 운용하는 것은 요격 임무 이외에 해상에서 다양한 작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래서 지난 6월에 정조대왕함으로 명명한 이지스 구축함의 경우에 2년 후에나 시작할 수 있다고 그날 현장에서 설명이 있었는데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맞습니다.

○임병헌 위원 다행히 정조대왕함에는 SM-3, SM-6 등 미사일 요격용 유도탄 탑재가 가능하고 이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문제는 2년이 지나야 되니까 그 사이 공백이 문제인데 국민들은 공백 기간을 어떻게 할지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현재 SM-6는 이지스함

전력화와 연계해서 전력화를 추진하고 있고 또 SM-3도 탑재하게 되었지만 이것은 한반도 전구 작전 상황에서 복합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에 적합한지 현재 검토 중에 있어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전력화 여부가 확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문제는 2년 후에 가능한데 2년 사이에라도 혹시 그러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우리 해군에서 대응할 수 있을지 이 점이 궁금하다는 얘기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전력화 시기를 최대한 단축시키도록 현재도 노력하고 있고 다른 다양한 대응 수단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해서 국민들이 걱정 안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이 약 6000억 원을 들여서 함대공미사일 SM-2 400여 개를 들여왔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맞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그 SM-2를 이지스 구축함 세 척하고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여섯 척에 각각 운용하고 있는 걸로 자료상 나와 있는데 사실 맞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맞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 SM-2 400여 개 중에서 현재 시험 발사한 게 36개인데 25개는 성공을 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실패를 했다. 그런데 그 1개의 가격이 한 15억이 넘는 가격인데, 국민의 세금으로 구매했는데 발사 성공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현재 그 문제점들을 확인 중에 있고 미사일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11개 중에서 유도탄 자체 결함이 있는 게 6개가 나와 있고 운용자 미숙 2개, 원인 규명이 안 되는 것 1개, 설계 한계를 초과한 게 1개, 원인 분석 중 1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세밀히 분석해서서 실패율이 낮아지도록, 성공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SM-2 400여 개가 지금 미국으로부터 들여온 게 맞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임병헌 위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400개 전체에 대해서.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품질관리대책을 개설하면서 전수조사하는 것으로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런데 이게 결함이 나왔으니까 만일에, 제조사로부터 근본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은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또 결함이 확인된 것은 그 숫자만큼 다시 받아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현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방사청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신속히 검토한 후에 의원실로 보고해 주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리고 의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의장님 철학을 아주 잘 하셨는데 우리 군은 적이 도발하면 응징해서 철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했는데 이 철저한 대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적이 도발을 하면 신속·정확·충분한 대응을 단호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피해보다 적의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함으로써 적의 도발 의지를 분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임병헌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과 합참이 해야 될 최우선 과제를 의장님께서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과 태세를 갖추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능력과 태세 강화 방안이 무엇인지?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능력면에서는 현재 전력 소요로 판단하고 있는 것들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이 있는지 또 그 시기를 단축할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것이고, 태세에 있어서는 3축 체계의 실행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계획이나 운용 개념, 작전 수행 체계 또 이것을 시행하는 전담 조직을 발전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만약에 한미 동맹이 지금 절실한 상황인데 미군의 전략자산이 빠져 나간다고 가정할 경우—가정입니다—에 우리 군 스스로의 힘으로 대북 감시라든지 조기경보태세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해 주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일단 조기경보태세는 일부 제한이 있어서 현재 독자적인 능력을 확충하

기 위해서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니까?

지난 문제인 정부……

시간이 다 돼서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좀 더 추가질의 하시겠습니까?

○**임병헌 위원** 예, 간단하게.

문제인 정부의 우리 군과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 우리 군의 국방 전략상 큰 차이점을 간단하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북한을 포함해서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고 또 유사시에는 승리를 달성하는 그런 전략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3축 체계를 강화하는 것 또 국방개혁 4.0과 연계해서 과학기술 강군, 즉 AI의 첨단과학기술을 적용한 과학기술 강군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는 것이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임병헌 위원** 그 차이점을 긍정적으로 잘 적용해서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임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안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안규백입니다.

먼저 덕장과 지장으로 평가받는 의장 취임을 축하합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감사합니다.

○**안규백 위원** 사실 저는 2006년도에 군인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합참의장 청문회 제도가 생겼는데 저는 군의 지휘 서열 1위인 의장을 청문한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마 제도개선 해야 하는 것에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의장님, 2018년도의 기무사 문건 유출과 관련하여 의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합참에 계엄과가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계엄과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기무사에 계엄과가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없습니다.

○**안규백 위원** 없지요? 그러면 계엄의 주무부서가 어디인가는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계엄의 정

상적인 지휘 계통을 무시하고 군 내부 비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군의 정치적 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규백 위원 계엄 계획의 적법성·적절성·권한 그리고 이 문제를 뛰어넘어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현재 그와 관련된 내용은 조사가 앞으로 더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것이고 의장의 생각을 지금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를테면 국방부에 동원과가 있듯이 합참에 계엄과가 엄연히 있어 가지고 합참의장이 계엄사령관이 돼서 지휘·통솔과 군의 모든 것을 이렇게 하는데 합참이 아닌 기무에서, 비선 조직에서 문건을 생산해 낸 것에 대해서 우리 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얘가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어떤 업무든 해당 편제상의 또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과업이 부여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앞으로도 이런저런 문제가 도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장으로서의 지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우리가 디데이 3·2·1, H-hour가 시작되면 말이지요 어떤 체계성·운용성·작전성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는 좀 덜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에 대해서 개념적으로는 우리가 정립이 돼 있지만 어떤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돼 있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우리 합참도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의장님의 재임 기간 동안에 이런 핵과 미사일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액션 플랜에 대해서 좀 정립을 해 놓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수차례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합참의장 재임 기간에, 아니면 우리 군 전체를 보더라도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에 가장 역점을 뒀야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안규백 위원님 강조하신 내용에 기초해서 또 충분하게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살피겠습니다.

다.

○안규백 위원 아마 의장님 재임 기간 동안 이걸 해 놓으면 상당히, 우리 군에 대해서 또 국방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임위 처음 했는데 언제 주장을 했다는 얘기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처음 회의 하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 제가 알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개념을 뛰어넘는 액션 플랜이 필요하더라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의장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략사령부를 지금 창설을 하겠다라는 것에 관해서 의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일단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억제와 대응 능력 강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규백 위원 문재인 정부에서도 전략사령부를 준비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이런저런 이유로 전략사령부를 창설하지 않는 게 합당하겠다 그래서 핵대응센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왜 갑자기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겠다, 아마 그 당시에 이종섭 장관께서도 합참 차장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장군단 토의에서 상당히 이 문제가 논의가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전략사령부 창설에 대해서나 또 그 역할에 대해서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최적의 방안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전략사가 창설되면 이를테면 지상의 미사일, SLBM 그다음에 공군의 F-35A, 철매Ⅱ·Ⅲ, PAC-3 이런 전략무기들이 전략사령부로 배속이 될 것이고 이게 만약 개전 초기에, 일주일 정도에 다 소모될 것인데 그러면 그 이후 전략사령부에서 할 일이 뭐냐? 또 더 중요한 것은 ‘합동참모회의 의장이 군령을 가지고서 군의 지휘·통솔, 지휘를 다 하고 있는데 전략사령부가 생기면 합참의장의 역할은 뭐냐?’, ‘기능과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복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현실 아닙니까? 아마 그 당시에도 제가 기억되기로는 이 문제가 나와서 전략사령부 창설하는 대신에 핵·WMD 대응체계로 바꾸자 해서 그걸 지금 기구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합참 참모부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 여전히 다양한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했을 때 어떤 지휘 관계를 갖고 또 어떤 전력이나 능력들을 할당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안규백 위원** 의장님, 우리 군의 지휘구조 개편이 어떤 특정 군의 영역 다툼이나 정치세력에 의해서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안보에 흔들려서는 안 되죠. 어떤 것이 가장 우리 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정말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유리한지 이런 면밀한 판단을 해주셔서 가지고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 부합한가 또 합동참모회의하고 합동참모부하고 중복되는 데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군사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의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의장님은 1986년도에 보병 소위로 임관하셨죠? 위국헌신 자세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장님 선배들이 요새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전직 장관 3명이 고발돼 있고, 다 제복을 입은 군인들 아니었습니까? 이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승겸 의장 선배들께서 군의 명예를 가지고 사는 분들인데 망신을 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후배 군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어떤 상황에서든지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규백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었는데 동문서답하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1분 더 드렸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의장님, 2019년 8월 달 국방중기계획에서 다목적 대형수송함-II 개념설계 계획이라고 해서 경

향모 사업이 시작됐는데 아시죠?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영배 위원** 올해 2022년도 예산에 72억 원의 기본설계비가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데 내년 예산, 그러니까 23년도 예산에는 관련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향모 사업을 필요하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경향모 사업은 합참에서 이미 전력으로 소요가 결정돼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김영배 위원** 국방부장관이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경향모의 효용성은 인정을 하지만 거기의 탑재기, 함재기가 국내 개발을 할 예정이어서 이런 부분을 보고 살피겠다’ 이렇게 한 인터뷰를 봤는데요, 이게 KAI에서 개발한 KF-21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함재기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발해서 함재기로 가능한지를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KF-21을 염두에 둔 게 맞는 거네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영배 위원** 그러면 이 경우는 수직이착륙이 안 되는 기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경향모가 아니고 중형향모로 추진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아무래도 전반적인 운영시스템 구조가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KF-21을 함재기로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경향모가 아니고 중형향모를 추진한다 이렇게 결론이 난다고 봐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것 또한 같이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데 현재 사이즈로는 수직이착륙기 이외에는 제한이 됩니다.

○**김영배 위원** 올해 기본설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경향모의 경우에 2030년 이후에나 전력화가 되는데 중국의 경우는 보니까 향모를 세 번째 건조하고 있다고 하고요, 일본은 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하는 사업이 추진 중이라고 하고, 인도는 2030년까지 6만 5000t급 향모를 건조하겠다고 이렇게 아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의 이런 여러 상황을 보거나

혹은 전 세계의 지금 상황이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거의 고립주의를 미국이 채택하게 되면서 미중·미러 등을 비롯해 각국에 각자도생의 국제질서, 정글질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미래 전력으로서의 경향모, 지금 시작해도 그렇게 빠른 게 아니라고 보이는데 아까 얘기했던 기존의 이런 논의를 뒤집고 지금 새로운 걸 검토한다고 해서 전 정부에서 논의했던, 특히 국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라고 해서 이걸 이렇게 가볍게 뒤집을 내용인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큰 걱정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앞에서 말씀드렸던 합제기 국내 개발에 대한 것도 다양한 의견들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전력을 우리가 구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자 그다음에 위협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전력으로 만들어 나가자, 그런 절차, 과정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배 위원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의 경우도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마다 가장 정확하게 탐지하고 추적하는 대한민국의 주력 전력으로 활약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평가가 좋다고 알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우에 우리가 한국국방연구원하고 국방부 연구용역을 통해서도 경향모 사업이 사실은 필요하다, 오히려 늦었다 이런 결론이 났었는데 지금 이것을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합참의장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나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엄과 관련해서 전혀 자기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엉뚱한 곳에서…… 만약에 지금 합참의장님이 지휘하시는 군 체계 내에서 다른 곳에서, 다른 부대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이 생산됐다 이렇게 하면 합참의장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당 관련 업무의 책임과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김영배 위원 만약에 그게 합참의장님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 오늘 벌어졌다 그렇게 하면 의장님은 어떻게 대응하실 방침을 갖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확인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벌어졌다면?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 내용과 수준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김영배 위원 그러니까 군이라는 곳이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공식적인 무력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무력 조직이기 때문에 합법성과 합헌성 이게 가장 중요하고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기율이 가장 중시되는 조직 아닙니까? 전시에는 심지어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즉결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들도, 여러 권한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다른 것도 아니고 계엄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지침서를, 작전계획서 같은 것을 권한이 없는 곳에서 만든다고 하는 행위는 거의 쿠데타에 해당하는 행위로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기본적인 것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성격 규정이나 전반적인 것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위원 의장님 재임 시에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또 많은 국민들도 아마 그렇게 기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인사청문회는 안 하셨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인사 검증을 몇 가지 하고 그리고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63년에 합참본부가 처음 창설됐죠? 그런데 63년 이후에 현재까지 국방장관이 34명이 됐습니

다. 그런데 이분들 중에서 합참의장 보직을 받으셨던 분이 몇 명이나 계셨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14명입니다.

○윤후덕 위원 한 40%가 넘어요. 그렇죠?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윤후덕 위원 합참의장으로서 어떻게 좀 느낌이 오십니까? 제가 지금 덕담을 드리는 거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많은 분이 장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윤후덕 위원 앞으로 국방장관이 되실 현실적인 가능성이 아주 높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헌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

○윤후덕 위원 무슨 답변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어때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임무 완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또 국방부장관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취지에서 몇 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장관께서 하나회 12·12 쿠데타에 대해 비난한 비유적인 설명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79년 12월 일부의 정치군인에 대한 12·12 쿠데타에 대해 합참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쿠데타로 규정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합니다.

○윤후덕 위원 너무 간단히 말씀하시네요, 사법적 결론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80년 5월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이라는 정부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현승 위원장, 김병주 간사와 사회교대)

○윤후덕 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에람 공군중사 사건이 있었죠? 이에 대해서 100일간의 특검수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그것 잠깐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의장님, 공군의 수사와 또 국방부의 재수사마저 모두 부실하였습니다. 결국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현 합참의장으로서 이에 대

해 반성과 회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특검의 수사 결과를 존중하고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제가 반성이나 회한을 해달라고 했는데……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특검의 수사 결과에서 어떤 점이 문제점이었는지 다 적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윤후덕 위원 군대 내에서 조사나 수사가 계속 부실해지면 병사든 여군이든 신체와 인격이 안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다음 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돼요.

병사하고 간부 간에 핸드폰 사용을 차별하고 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윤후덕 위원 근데 병사들은 핸드폰 사용에 왜 차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임무의 특성이나 임무수행을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시범운영 간에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미군 등은 좀 어때요? 해외 주요 국가들의 병사하고 간부하고 차별이 있나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국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차이 나는 것들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는데, 차이를 두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거기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거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것은 우리가 국가마다 징병 운용에 대한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상대적인 비교는 좀 제한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만약에 전시가 됐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핸드폰에 대해서?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전시에는 임무수행상 작전 보안 유지 차원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렇게 될까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

○윤후덕 위원 정말 그렇게 할 건가요?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세요.

다음, 9월 초지요. 9월 8일인가 북한에서 핵무

력정책법을 법제화했습니다. 이 법 중에서 3조 1항 ‘핵무력은 국무위원장의 유일적 지휘에 복종한다’, 9조 1항이요. 그 등등 해서 ‘그에 상응하여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갱신, 강화한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공개적인 의도는 뭐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먼저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었는데 핵 보유국의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자 하는 것 또 비핵화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공표한 것 또 이와 관련하여 대남·대미 압박을 시도하는 것 또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을 우리 한국과 동맹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의도라고 평가합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이렇게 법으로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이나 하나 있는 것 같았는데.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미국에서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이번 것은 그러한 것을 훔쳐 낸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것인데, 그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핵 사용에 대하여 조건을 다섯 가지 제시했는데 매우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하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시하고 있는 NPR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아니, 그 외에 다른 나라들에서 이런 경우가 있는지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없습니다.

○**윤후덕 위원** 없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윤후덕 위원** 하여튼 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병주**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합참의장님, 윤후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핸드폰을 전시에는 못 쓰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봐요. 핸드폰은 전시에 무기입니다. 전시에 거기에 여러 가지 앱을 깔고 보안조치를 하면 신무기로써 쓸 수가 있어요. 본인의 위치……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긍정적으로 좀 검토해 주세요.

다음은 이어서 존경하는 설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합참의장 하시기 전에 합참에서 쪽

계셨고 그리고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직을 2년간 하셨기 때문에 최신 군사작전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봐야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설훈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선언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설훈 위원** 선제 사용을 한다고 그러면 핵 공격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핵 공격을 당했을 시에 어떤 매뉴얼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내가 요구했는데 답변을 내가 못 들었습니다.

의장께서, 본 위원이 지금 다시 얘기를 묻겠습니다. 북한이 핵 선제 사용을 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도록 돼 있습니까? 매뉴얼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계획을 갖고……

○**설훈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매뉴얼이 있으면 있다고 얘기하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매뉴얼이 있네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설훈 위원** 매뉴얼이 있다면, 핵 공격이라는 것은 군뿐만 아니고 전 국민에게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관련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숙지를 시켜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공개하고 공유해야 될 부분의 적절한 범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아니, 그러나 군사작전상의 부분이 있고 피해자는 국민이 되잖아요. 군만이 피해자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설훈 위원** 국민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 대상인 국민들이 어떻게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는 건 국민들에게 알려 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기본적인 상식에 속할 텐데.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북한이 핵무력을 자기들이 선제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한 상황에 있어서는 최소한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상황이 일어났다,

우왕좌왕해서 아무런 대처도 못 하고 그렇게 국민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은 뻔한데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 아니냐 본질은 이 얘기에요. 군사작전상에 관계되는 부분은 알릴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국민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설훈 위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랍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것은 합참의 소관이기 보다는 다른 관련 정부부처와 협력해서 발전시키 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간사, 이현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설훈 위원 이 문제는 그냥 간단히 넘어갈 문 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안의 중대성을 얼마나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대응방안이 전연 다른 상황이 나올 수 있고 국가 전체의 상 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상황 의 엄중함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대처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군사작전에 관한 부분은 알릴 필요가 없지만 적어도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부 분에서는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떤 방안들을 찾 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히 이해를 시켜야 한 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다시 또 묻도록 하겠습 니다.

그다음, 이것 다 연관돼 있는 내용들인데 대북 전단 살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14년에 28사단장을 하셨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설훈 위원 그때 북한이 포를 쏘았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설훈 위원 그때 대응을 잘하신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상황에서 지금 비추어 본다면 만 일에…… 우리도 대응사격을 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설훈 위원 그때 기억 잘해 보십시오. 2014년 이기 때문에, 사단장으로 계실 때 대응사격을 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군이 경고방 송을 하고 K-6 중기관총 40여 발을 북 GP를 향 해서 발사하고 그리고 또 북쪽에서 개인 화기로 응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K2 소총 9 발을 북 GP에 대응사를 하고 이런 교전이 있었 습니다.

물론 서로 살상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게 의미 하는 바는 뭐냐? 이게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확 전이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본의 아니 게. 쌍방이 같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만일에 그 상황에서 뭐가 잘못돼 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군 인들이 죽었다 이렇게 되면 확전은 분명한 거거 든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핵전으로까지 연 결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묻는 것은 이 상황이 왜 생겼느냐?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생긴 것 아 니니까? 그게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대북전단에 대해서 법적으로 못 하게끔 막아 났 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최근까 지도 6월 5일, 28일, 7월 6일 대북전단이 살포됐 습니다. 지금 북한이 그냥 보고만 있는 것 같은 데—물론 대응은 했습니다. 군사적으로 대응한 것은 아니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이 경찰에 고 발돼 있습니다.

지금 합참의장으로서 볼 때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첫 번째, 2014년도의 상 황에서 그 대응사격 말씀하신 것은 아군이나 적 군이나 피해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 경 고사격 수준이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설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대북전단과 관련된 사항 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한 수 준의 대비와 대응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법상으로는 하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설훈 위원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께서는 이 상황이 다시 되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대단히 위험한 국 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내용이 파악된다면 못 하게끔 막는 것이 국가안 보를 위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해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대비 태세를 잘 유지하 겠습니다.

○설훈 위원 그다음에 북이 핵무력을 법제화까 지 선언했는데, 세상 이치라는 것은 다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왜 북한이 이렇게 했느냐, 이러 게 나왔느냐? 그것을 더듬어 보면 윤석열 정부에 원인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이기는 하지만 대통령후보 시절에 선제타격 운운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본 위원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대단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라고 국민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후보라서 표가 귀중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대통령후보로서 입에 담아서 안 되는 얘기를 했다. 이게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선제타격 운운하는 것은 전쟁하겠다는 얘기에 다름 아닌데 어떻게 대통령후보가 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느냐? 본인이 심하게 공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북한이 핵 선제 사용 법제화까지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논의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안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첫 번째, 북한이 핵 개발한 것은 김일성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간 자체 로드맵에 의해서 지금까지 진행돼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까지 긴장을 조성하거나 위협의 근원이 되고 주체가 되는 것은 북한이 명확합니다.

세 번째, 당선인 시절에 선제타격에 대한 말씀을 언급한 것은 전쟁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임박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또 적의 핵·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 국제법적으로 허용이 된 자위권 차원의 조치를 하겠다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설훈 위원 자, 그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적어도 대통령후보가 된 사람이 선제타격 운운하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 일반이 다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만일에 의장이 그런 징후가 있다고 해서 선제타격 하겠다고 나오면 전쟁하겠다는 이야기하고 다르지 않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초점은 그거예요. 그 결과 지금 북한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가 이거예요.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반도 전체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까지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이에요. 우리 그것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이런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의장으로서 이번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집중해서 대비하고자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재 위협의 근원과 긴장 조성의 근원과 실제, 주체는 북한이 명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설훈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한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호 위원 합참의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대단히 역사적인 날입니다. 남북 9·19 군사합의 4주년 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군사합의 4주년 기념 토론회를 합니다. 이 자료집을 제가 보면서 몇 가지 느낌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9·19 군사합의가 이뤄졌으나 북한은 그동안에 미사일 시험과 미사일 발사,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 등이 있었고 이번에는 핵 불포기 선언과 그리고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법제화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봤을 때 9·19 군사합의에 의해서 북한의 대한민국 위협이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님?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접적지 해공역에서의 군사적·우발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등에 의한 전략적 도발 위협은 증대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렇지요, 누가 봐도 이것은 뉘 불변의 사실인데.

이 자료집에 의하면 전 남북군사회담 수석대표였던 김도균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8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판문점선언 그리고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 상호 입장을 북한과 교환했다. 그리고 군사회담 진행 간 수십 차례의 문서 형식의 토의를 병행했다. 그리고 군사합의서 문안 조율을 위해서 유엔사 측과도 긴밀히 협조했다. 또한 상호 의견 교환이 지속적으로 실시됐었다’ 이렇게 오늘 토론 자료에 명시해 놨습니다.

2018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의장님은 어디 근무하셨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3군단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한기호 위원** 당시에 군단장 하실 때지요? 그 이후에 합참의장님 와서 파악이 얼마나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사회담 진행 간 수십 차례 문서 형식의 토의를 병행했다…… 이때 합참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아마 각 검토사항에 대해서 작전성 검토, 작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과거에 했었으나 합참에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군사합의 한 내용을 합동참모회의에서 주제로 다뤘습니까, 안 다뤘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다루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어떻게 이러한 사항을 합동참모회의에서 주제로 다루지 않습니까? 국가의 안보에, 군사적인 상태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합동참모회의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습니까? 부적절한 것 아닌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검토가 필요했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호 위원** 그다음에 연합사에도 확인했습니다. 당시에 군사합의서 문안을 유엔사 측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도 이번 국정감사 때 다시 따지겠습니다만 실제로 연합사에서든 여기에 의견을 충분히 개진 못 했다고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제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제한이 됩니다.

○**한기호 위원** 그러면 오늘 국방위원회가 끝난 이후라도 합동참모본부에서 9·19 군사합의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 자료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비문이라면 직접 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엄사 문건에 대해서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고발했습니다. 당시에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이 사안에 대한 검토를 누구한테 시킬까 고민했습니다. 합참에다 시키거나 작전부대에다가 시켰을 때는 그 자체가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행계획이라고 했던 그 사안 때문에 관련이 없는 기무사에다가

검토를 하라고 시킨 겁니다. 이것은 합참에서 검토를 했으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계엄사령관이 합참의장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현재는 계엄이 발령됐을 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그래서 그때도 육군총장이 하는 게 맞다,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실제 작전을 지휘하는 부대에다 이것을 검토시키면 시행계획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무사에다 시킨 겁니다. 이 점을 의장님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3자인 기무사가 이 내용을 검토한 겁니다.

기무사는 업무 영역 자체가 특별참모 기능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역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기무사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검토하는 데 대해 해라, 말아라 하는 분명한 선이 없습니다.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과거에 사단장, 군단장 하시면서 기무부대장한테 ‘그거 어떻게 생각해?’ 안 물어보셨어요? 물어보시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한기호 위원** 똑같은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기무사가 이것을 검토했다라는 데 이게 부적합하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선제타격 이것은 선제타격이라는 말 자체로 들었을 때는 그냥 먼저 때리는 것 같은 개념이지만 실제로 우리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가지고 곧 공격을 받을 때 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한기호 위원** 그래서 이미 국방백서에도 선제타격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한기호 위원** 그런데 선제타격이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북한이 핵 불포기 선언과 핵무기 사용 5대 조건을 법제화했다 이거와 연관시키는 것은 부당합니다. 의장님이 이것을 부당하다고, 대답하기 불편하다 하더라도 분명하게 부당한 겁니다.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이미 북한은 우리와 9·19 군사합의를 하고 많은 평화 협의를 하고 했지만 하나도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서 변화된 게 없습니다. 항상 대남 적화통일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

을 윤석열 대통령 과거의 후보 시절과 연관시키
서 엮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또 이번에 원인철 의장이 임기를 못 마치고 그
리고 합동참모의장으로 김승겸 대장이 부임했다
는 문제에 대해서도 과거에 이순진 합참의장에서
정경두 합참의장으로 바뀔 때 이때도 지금과 똑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로남불입
니다.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자꾸
자신들의 과거는 숨기고 얘기한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과거에도 똑같이 했다는 거
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하게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다……

그다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
론조사에 대해서, 지난번 국방부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굉장히 여론의 좋은 평가를 못 받았습
니다. 그런데 우리 국방위는 뭐하러 여론조사를
합니까? 욕먹고 싶어서 합니까?

○위원장 李憲昇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사님들하고 조금 협의를 했고요, 또 국회의장
실에서도 요청이 와서 서로 검토를 했는데 우리
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단지 몇몇 위원님들께서 제안을 했기 때
문에 참고용으로 저희들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한기호 위원 국방부가 욕을 신나게 먹고 있
는데 대신해서 우리 국방위원회가 욕먹어 주려고
했다면 몰라도 뭐하러 여론조사를 하느냐는 거지
요. 저는 부적절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제가 2분 더 드렸습니다.

○한기호 위원 예.

○위원장 李憲昇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11시 10……

○안규백 위원 왜? 아니, 회의 시간이 뭐……

○성일종 위원 그냥 하시지요.

○위원장 李憲昇 계속할까요?

○안규백 위원 예.

○위원장 李憲昇 합참의장님, 계속해도 괜찮겠
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괜찮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요청에 의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님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러면 신원식 위원 순서까지만 하고 조금 쉬
었다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아닙니다. 성일종 위원님이 좀
급해서 바꿨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그러니까 그것까지만 하고……

정성호 위원님 그다음 성일종 위원님까지만 하
고 10분간 쉬겠습니다.

시작하시지요.

○정성호 위원 경기도 양주 출신의 정성호 위원
입니다.

먼저 합참의장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겠습니다.

이력을 보니까 제가 군에 장교로 근무할 때하
고 근무기간이 좀 겹치더라고요. 그런 약간의 동
질감을 느꼈습니다. 또 제 지역구 인근에서 사단
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주변의 평판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평판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질의에
대해서 군인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존경하
는 윤후덕 위원님께서 국방부장관 되신 분들 중
에 40% 좀 넘게 합참의장을 역임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꼭 뭐가 되겠다고 하면 잘 안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셔야 됩니다. 군인으로서 군
의 최선임 장교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
운 겁니까? 장관이 되면 완전히 정치인이 되는
건데 크게 명예스러운 것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
나 군의 최고 선임 장교가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
국방·군사·안보의 최고 책임자가 됐다는 것은
정말 영예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군인사법에 지금 합참의장 임기가 2년
으로 법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정성호 위원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게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군이 충성하는 대상이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군이 충성해야 될 대상은 국가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군이 충성할 때 그 충

성의 대상은 국가와 우리 국민 아니겠어요? 대통령이 바뀔다고 하더라도 군의 고유한 임무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정치적인 여러 입장들 또는 정파의 여러 입장에 의해서 군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경우는 있지만 군의 기본 임무는 변함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그것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호 위원 군의 기본 임무에 충실하는 그런 모범을 보이는 합참의장이 되셔야 되고요. 그러면 또 다음에 다른 어떤 크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는 저는 여러 평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또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커졌을 때도 있고 또는 평화 지향적으로 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 때문에 그로 인해서, 9·19 군사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이 더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고 북핵 위협이 커진 거냐? 저는 이렇게 단정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9·19 군사합의 때문에 우리 군의 북핵에 대한 대비, 북 핵·미사일에 대한 대비, 군의 국방·안보태세가 약화됐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9·19 군사합의와 현재 상태 또는 그 당시 남북 간의 또는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기조 이런 것들은 상호 연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어느 한 가지라고 얘기하기는 제한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렇지요. 저는 9·19 군사합의 전이나 후나 우리 군의 북핵에 대한 대비, 북 미사일에 대한 대비, 국가 안보 강화, 준비태세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군의 역량이라든가 자세는 아무 변함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일관되게 계속 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9·19 군사합의에 관련 돼서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 군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이 없도록 노력했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렇습니다. 아까 의장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9·19 군사합의 이후에 접

경지역에서의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같은 것은 오히려 없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사실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우발적 충돌 없었습니다.

○정성호 위원 지금 국방백서만 봐도 2010년도에서 2017년도까지는 264건의 국지도발 침투현황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한 건도 없었어요. 이게 국방백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019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2021년에 딱 한 건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어쨌든 남북 간의 국지적인 또 우발적인 도발이 없어진 것도 사실이고, 물론 북한이 최근에 북핵을 법제화하는 그런, 일종의 말폭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것 때문에 한미동맹이 균열되고 우리 군의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우리 군은 그것에 대해서 대응해 가지고 상응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그런 것에 동요되지 말고 기본 임무에 충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 심의 때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겠지만 국방 예산 증가율만 봐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국방 예산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정성호 위원 그때 5년 동안 연 8.9%의 국방 예산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입만 열면 안보, 안보 얘기하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폭 떨어져 가지고 5.2% 선으로 떨어졌어요. 박근혜정부 들어와서는 더 떨어졌습니다. 4.2%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시 이것을 2%…… 국가 예산에서 1% 증가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6.3%로 올려놨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보니까 국방 예산 증가율이 4.6%인데 이게 어느 정도 유지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국방위에서 예산 심의하면서 조정이 되겠지만 저는 이런 것만 봐도 말로만 안보, 말로만 국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군이 북핵을 억제할 수 있는 우리 군의 전력을 강화하는 데 어떤 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저는 이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께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런 면

에서 하여튼 군이 정치권의 여러 가지 정쟁적인, 정략적인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군 기본 임무에 충실해 주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각오를 말씀해 주시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우리가 능력과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예산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능력과 태세가 구축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적을 바라보고 적을 압도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게 예산 심의 때도 논의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합참 이전에 대한 합참의 공식 답변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사업 규모, 사업 예산 등을 판단하고 있음’, 저는 선행연구……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분만.

○위원장 李憲昇 예, 하십시오.

○정성호 위원 선행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 선행연구가 되지 않고 있는데……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마이크 들어왔습니다.

○정성호 위원 선행연구가 도대체 어디서 누가 하고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게 군사 보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좀 파악해 가지고 말입니다, 이걸 합참의장이 정말 신경 쓰셔야 돼요. 국회와도 협조를 해야 됩니다. 왜냐, 내년도 같은 경우 지금 예산안 대충 보니까 내년도 합참 이전에 관련된 비용들 예산안에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현재 사업타당성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재정 당국과 협조할 사항입니다.

○정성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있는데 지금 전혀 진행이 되는지 국회도 알 수가 없고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신경 쓰셔야 돼요. 예비타당성조사도 지금 합참 이전 관련된 예타 조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KDI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아직 착수가 안 됐습니다.

○정성호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게 되고 나서, 왜야만 또 설계비라도 반영할 수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국회에도 보고가 돼야 됩니다. 알아야 설계비라도, 일단 나오게 되면 설계비라도 먼

저 반영해 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미 대통령실이 이전해 버렸고 합참도 이전할 수 밖에 없는 또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합참의장께서 이 문제를 여러 가지…… 저하고 의논할 게 아니라 진행 상황들 제대로 파악, 확인해 가지고 국회하고 논의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선행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진행 결과에 따라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성호 위원 여러 가지가 전혀 예산 추계도 없이 졸속적으로 대통령실이 이전되다 보니까 불뚱이 우리 군에 튀겨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겠지만 국회에서 최종 의결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참의장이 여러 가지 관련 예산들, 특히 언론에서 늘 지적한 EMP 방호시설 관련된 문제들 그다음에 최소한 기존에 있었던 방호시설을 갖다가 옮기는 그런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체크해 가지고 국회와 사전 논의하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점 잘 염두에 두시고요. 이전에 필요한 예산들 어떻게 확보할 건지 좀 신경 쓰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정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종 위원 의장님, 9·19 군사합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발표가 다 됐는데 그 당시의 전문내용을 보면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가야 하며 이를 위해서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들을 조속히 이루어 나가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가 됐던 내용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성일종 위원 그러면 9·19 군사합의 이후에 이런 약속들이 지켜졌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이행되지 않았습니니다.

○성일종 위원 이행되지 않았던 것들은 어떤,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지금 핵 실험을 준비하고 있는 징후들이 있고 또 많은 미사일 발사들이 있었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9·19 군사합의가 효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접적지 해공역에서의 우발적 충돌은 없었지만 전략적 수준의 위협은 증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 평가입니다.

○**성일종 위원** 전략적 측면에서는 위협이 증가되고 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핵·미사일 위협을 말씀드립니다.

○**성일종 위원** 9·19 군사합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깼습니까 아니면 북한이 먼저 깼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북한이 위반했습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우리가…… 오늘 문재인 대통령께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축하를 하셨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소망하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마땅히 존중하고 이행되어야 하는 약속들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에 저는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키지 않은 게 북한이라는 말이지요.

또 남북군사합의서를 부속합의서로 채택해서 하늘과 땅, 바다 어디든 군사적 위협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실천적 조치들에 대해서 합의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 약속도 꼭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구요,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또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는 뜻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랬는데 이 또한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은 것은 북한이라는 말이지요. 동의하시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9·19 군사합의의 원래 취지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것인데 현재 핵·미사일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고 또 핵 무력 법제화를 공표하는 것을 봤을 때는 그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 명확합니다.

○**성일종 위원** 2019년 11월 25일 날에 창린도를 김정은이, 여기에 시찰하면서 해안포 사격이 있었어요. 이때 국방부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위반한 것에 대해서 아주 유감을—문재인 정부에

서—표명했다는 말이지요. 알고 계신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성일종 위원** 이때부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재임 시절이에요. 대한민국은 언제 한 번 약속한 것을 먼저 깬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깬 적이 없습니다. 항상 북한이 먼저 깨고 있는 거예요.

2020년도 6월 16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아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2020년 말씀이십니까?

○**성일종 위원** 6월 16일인데……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적 GP 총격……

○**성일종 위원**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것을 폭파한 날이거든요. 이 또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적대행위입니까, 아닙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크게 봤을 때 전략적 수준에서 위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남북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늘 이 합의를 휴지 조각으로 만든 것이 북한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이번에 아까 한기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북한이 법제화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성일종 위원** 법제화는 어떤 의미입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공식적으로 그것이 변화시키기가 어렵다, 근거가 있다는 것을 공표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 이 선언적인 의미, 9·19 군사합의보다 북한이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들이 어떤 개념이라고…… 상위적 개념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에서 보면?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상·하위를 따지는 것은 제한이 되지만 어쨌든 그것이 법제화시켰다고 하면서 대내외 공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성일종 위원** 이 법제화시킨 것은 9·19 군사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군사적 긴장 완화 취지에 위배되기 때문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일종 위원** 지금 그러면 합참은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지금 북한이 법제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선제타격이든 어떤 것이든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을 법으로

천명한 거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에 대한 합참의 전략적 접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현재 핵 무력 법제화를 포함해서 북한이 보이고 있는 행동에 대한 것은 한미가 예상하고 대비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적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고 변화 상황을 추적해서 적시적으로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는 것, 또 우리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는 데 가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성일종 위원 평화에 대한 열망은 모든 국민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좋은 말씀 주셔서 이 부분을 국민들이 싫어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찬성할 일이지. 하지만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의 희망하고 북한의 희망은 완전히 배치된다는 거지요. 이에 대한 합참의 확고한 의지를 늘 갖고 있어야 됩니다. 북한이 평화적으로 나온다고 그러면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것을 마다하겠습니까.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면서도 뒤로는 법제화 하고 핵에 대한 위협을 계속 증대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의장님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명확하게 정리하시고 또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9·19 군사합의 이 자체가 다 무력화된 거예요. 이 또한 입장도 저는 합참을 비롯해서 국민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더 준비된 것 있으시면 오늘 국민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일단 북한의 핵에 대한 현재 위협이 증대되는 것은 확고한 대응 의지와 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9 군사합의에 대한 것은 북한이 이행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도발하거나 위반할 경우에 거기에 상응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일종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성일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정책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했다가 11시 35분에 속개하여 회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李憲昇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합참의장님, 늦었지만 먼저 축하드립니다.

합참의장님이 취임한 지…… 언제 됐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7월 5일 취임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한 두 달 됐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

○김병주 위원 두 달 됐나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병주 위원 그래도 안정적으로 하고 전투력을 강화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그거는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현안질의를 하면서 저는 의장님한테 대단히 실망스러워요. 어떻게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를 구분을 못 하시는 거예요?

판문점선언에 나온 걸 가지고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이나 성일종 위원님이 공격하는데 마치 그것이 9·19 군사합의와 일치되는 것처럼 답변을 하면 어떻게 해요?

성일종 위원님께서 남과 북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데 이런 걸 위반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이것은 9·19 군사합의에 있는 내용이에요, 판문점선언에 있는 내용이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판문점선언에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9·19 군사합의에 연계가 되고 그래서 제가 9·19 군사합의의 취지인 군사적 긴장 완화에 위배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판문점선언 3조 4항 사항이에요. 판문점선언에서는 전략적인 이런 것을 한 것이고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 주로 우발적인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지금 우리 지상에 비무장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동안 판문점선언이 발효되기

전까지 해상이나 공중에 비무장지대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

○김병주 위원 버퍼존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지상에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해상이나 공중에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해상이나 공중에는 없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없었지요? 그래서 지상에서 2km, 2km 비무장지대를 줌으로써 지상에서 우발적인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이 올라가는 것이 많이 완화됐지요. 그런데 공중이나 해상에 그게 없다 보니까 NLL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우발적인 충돌이 일상화돼서 연평도·백령도 주민의 어로 활동도 제한됐지요?

공중에도 마찬가지로요. 그런 버퍼존이 없다 보니까 무인기가 침투하고 그래서 늘 긴장한 상태였는데 공중과 해상에 비무장, 어떤 버퍼존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후에 평화가 일상화됐잖아요.

그런데 판문점선언에서는 비핵화를 하는 것이 공동의 목표다, 인식한다 이런 목표를 정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9·19 군사합의가 발효된 이후에 접경지역에서 획기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지요. 맞나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완화는 있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따지는 거예요. 광의적으로 굳이 이렇게 따질 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은 9·19 군사합의와 판문점선언을 수없이 읽고 해서 이것이 9·19 군사합의 위반인지 9·19 군사합의 정신의 위반인지 그런 걸 정확히 답변해야지, 그것도 구분 못 하고…… 위원님들이 구분을 못 해서 질문을 하면 정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리고 9·19 군사합의는 당시에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는데 유엔 사령관은 대환영이었어요. 왜? 유엔사의 정신이 뭐예요? 비무장지대에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전관리를 하잖아요, 유엔사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정전관리 임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상뿐만 아니라 해상·공중에도 정전관리에 용이하기 때문에 대환영을 했던 사항입니

다. 그것은 연합사 브룩스 사령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적극 환영을 했지요.

그렇지만 주한미군사령관 입장에서는 훈련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졌었고 연합사령관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시 임무나 전쟁 억제에 도움이 되느냐인데 다 해소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왜…… 연합사 그 당시에 작전차장 하지 않았나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합의하는 당시에는 아닙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고 하면 이런 것들의 배경을 좀 정확히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뭐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합참에 지금 합참이전TF가 6월 1일부터 구성이 됐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병주 위원 몇 명 구성돼 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

○김병주 위원 대령을 팀장으로 해서 한 6명 구성돼 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병주 위원 중간보고 받았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받았습시다.

○김병주 위원 그러면 합참 이전 비용이 거기에서 중간에 산출한 것이 2980억 된다고 판단을 했고 국방부장관이나 국무총리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선행연구를 통해서 확정되기 전까지는 공식적인 액수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공식적인 액수가 아니라 합참, 국방부장관도 인정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 건물은 본청 건물이고 추가해서 합참의장의 공관을 새로 신축해야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병주 위원 그것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것 예산은 다시 선행연구를 통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김병주 위원 최소한 이삼백억 원 들겠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김병주 위원 거기에 그 정도는 들겠지요.

그다음에 합참의 필수요원들 아파트 지어 줘야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아파트를 짓는 문제는 다양한 해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에

대한……

○**김병주 위원** 해결 방법이, 뭐 수방사 아파트 뺐어요? 대통령이 국방부 건물 뺐으니까 또 예하 부대 수방사 걸 뺐어서 하려고 합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아파트를 뺐는 것이 아니라 동빙고동에 있는 합참인원들과 또 수방사에 있는 합참인원들의 아파트를 교환하는 형태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그거는 임무에 지장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소요 부대인 합참에서는 제대로 된 소요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2980억 플러스알파인데 다 합하면 한 5000억 이상 소요돼요. 그러니까 합참은 대통령이 489억 이상 안 된다고 하니까 거기 맞추려고 하지 말고 소요 제기를 제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맞추려고 하는 것은 없고 소요 제기는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일본 초계기, 2년 전에 있었던 거 알고 있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병주 위원** 18년도에 네 번에 걸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를 위협해서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4단계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는 4단계, 일본은 5단계로 구체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합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현재 합참에서 추가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것이 유효한 것이지요?

그런데 보면 지금 국방부가 참 가관이네요. 국방부가 일본 초계기에 대해서 그때는, 19년도에는 실제 위협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 국방부차관이라는 사람이 문제인…… 이런 것들이 적절했는지 의문스럽다라고 얘기하면서 일본 편을 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누구의 편을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한일 간의 국방협력에 대한 것은 개선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 초계기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 해결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은 한일 간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변화되고 발전되는 추이와 연계해서 국방부에서 협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주 위원** 국방부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군복 입은 합참의장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해군들은 전부 다 구체화된 매뉴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대통령안보실이나 국방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또 군사적인 매뉴얼을 뒤로 후퇴시킬 겁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에서는 기본적으로 관련된 국가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는 것 또 우리 전력을 보호하는 데 관련된 조치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배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정의당 배진교입니다.

합참의장님, 축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9·19 군사합의 4주년 되는 날이라서 여러 의견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요. 물론 9·19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9·19 군사합의는 접경지 우발 충돌, 특히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게 핵심이었고 이런 우발적 충돌이 획기적으로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마치 이게 효과가 없었거나 반대로 북핵의 고도화를 도왔다는 주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합참의장님께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 환수가 아니라 왜 전환인지 질문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78년에 체결한 군사위원회 및 한미연합군사령부 관련 약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혹시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배진교 위원** 그런데 78년 당시 약정을 체결하고 한미연합군사령부 설치에 관한 각서를 교환했는데 이게 아직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것은 한미 공동 비밀

이고 또 정부 간의 비밀 외교문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개가 제한이 됩니다.

○**배진교 위원** 비밀 조약이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민들께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게 44년 전에 체결한 비밀 조약이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고 무엇보다도 주권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런 상황들이, 약정 상황으로 각서를 교환한 것 때문에 44년간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계속적으로 제약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약간 의문이 드는데, 이제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공개하고 내용들이 여러 차례 변경이 됐을 텐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공개를 하고 국민들의 동의 속에서 주권 회복을 위한 노력들이 계속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의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첫 번째, 관련 약정과 전략지시에 의해서 연합사에 대한 성격과 임무 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군사외교나 군사작전 측면에서 필요한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걸 말씀드리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권 문제하고는 다른 부분이다, 이것은 작전통제권이 주권에 대한 문제는 아니더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배진교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전권에 대한 제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권에 대한 문제라고 이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작전권의 제한이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작전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지휘구조입니다.

○**배진교 위원**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답변을 계속 얘기를 해 주시는데 저도 군사작전과 관련된 문제를 다 국민들께 공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이 조약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약정을 맺었다라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목표와 관련해서는 공개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연합방위체제의 일환으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배진교 위원**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정보공개 요청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한편

으로는 위헌소송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알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저는 이런 측면에서 그동안 이게 국방위원회에서 한 번이라도 비공개로 국방위원들이 보고받거나 또는 자료에 대해서 확인한 바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국감 전까지 이 문제에 대한 공개 여부, 특히 국방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는 적어도 국방위원 정도는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장님께 따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은, 앞서 초계기와 관련된 질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2018년도 일본 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근접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고 우리 군은 밝혔고 그런데 여전히 일본은 근접 위협 비행을 안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배진교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사실에 대해서 한국군은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일본 측은 아직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 근접 비행에 대한 사실을 공개하면 되는 문제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사실 확인이 되고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우리 한국군이 지금 초계기와 관련된 지침을 만든 부분이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위법하지 않다, 그리고 당연한 우리 군의 자위를 위한 지침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관련된 내용들은 실무 차원에서도 일본 측에 우리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충분히 전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일본 측 실무자들에게도 전달을 했는데 일본이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닌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제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좀 제한이 됩니다.

○**배진교 위원**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유엔총회에서 한일정상회담을 하겠다고 대통령실은 발표를 했고 그런데 일본 총리실, 일본 정부 측에서는 한일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이러면

서 지금 의혹이 드는 것이 강제동원된, 강제징용된 배상 문제와 그리고 이 초계기 지침의 문제들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실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거지요. 이런 측면에서 정치가 풀고 외교가 풀어야 될 문제도 있지만……

저도 1분……

○위원장 李憲昇 예, 1분 넣어 드리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정치와 외교가 풀어야 될 문제도 있지만 특히 이런 방위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방부의 확고한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전체 상임위에서도 이 초계기 지침 문제와 그리고 육일기가 제시되어 있는 관함식에 대한민국 국군을 대표하는 해군이 참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이 제기하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또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준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진교 위원 우려스러운 것은 국방부차관이 일본 측과 회담 의제에 초계기 지침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지금 다루고, 특히 관함식 참가에 대한 것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군의 입장을 확고하게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식 위원 합참의장님 수고 많으시고 오늘 또 정책질의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합참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님, 우리가 6·25 이후부터 또 그것을 거진 다 포함해서요 우리가 북한을 먼저 공격한 적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없습니다.

○신원식 위원 우리가 북한 주민을 위협하고 테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없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렇습니다. 2020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의 마지막 국방백서에도 휴전 이후에 북한의 침투·도발은 3120건, 60년대 이후에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사망자는 510명, 부상자는 495명—이것은 언론보도 종합입니다—이렇게 저의 의견을 했는데, 장관님 하여튼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 사실에 대한 이견은 없으신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다음에 지상·해상·공중에서 우발적 충돌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나라는 질문인데요. 1·2차 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2015년 지뢰 도발 등이 우발적 충돌입니까, 아니면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입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계획적인 도발입니다.

○신원식 위원 모든 우발적 충돌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3120회도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로 인해서 남북 간에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나 하면 우리가 북한과 어떤 협상도 하고 대화도 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나 특히 우리 군 장병들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해서 쉽게 얘기하면 쌍방과실로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는 걸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번도 공세적 행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계획적인 도발입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장병들이 설사 정부가, 어느 정부를 떠나서 남북 교류 협력을 하더라도 북한의 군사적 정체나 실체에 대해서는 절대 헛갈리면 안 됩니다. 그렇게 교육하실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다른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남북 간 합의 중에서 우리가 먼저 이를 무효화하거나 파기한 사례가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없습니다.

○신원식 위원 없는 걸로 기억하실 겁니다. 9·19 합의마저도 북한이 공식적으로 두 번, 비공식적으로라도 수차례 위반을 했습니다. 핵·미사일 도발에 관련해서는 해석에 이견이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위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견이 있다는 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전선에서 창린도 해안포 사격을 한 2019년 11월, 2020년 5월 중부전선의 GP 총격 이것은 명확하게 북한의 9·19 합의 위반이 맞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두 건 위반 사항이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가 남북한의 모든 군사적 충돌은 쌍방과실이 아닌 북한의 도발이다 이걸 꼭 명심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군비 통제와 관련된 질문 하겠습니다.

의장님, 군비 통제는 크게 구조적 군비 통제와 운용적 군비 통제가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알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운용적 군비 통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나?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면 우선 상대방이 군비 통제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보기 위해서 정찰·감시는 확대하고 그다음에 만일 애매한 군사적 충돌이나 뭐가 생겼을 때 이게 오해하지 않도록,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방어용 시설은 확대를 하되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공격용 시설과 장비는 줄인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맞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렇습니다. 운용적은 그 운용을 줄이다가 결국은 더 신뢰가 쌓이면 아예 공격용 무기는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신원식 위원** 그러면 9·19 군사합의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이게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까, 방해가 됩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원식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장관님이 잘못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92년도, 물론 그 전부터에 대해서 소련의 반대로 안 됐다가 냉전 붕괴로 됐지만 92년 헬싱키 항공자유화협정, 오픈스카이를 하게 된 것은 서로 통보를 하면—비무장입니다—비무장 군사 정찰기는 상대방 공중 영역을 정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됐든 미국, 나토가 됐든 직접 공격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말로만 아니고 당신 눈으로 확인을 하라, 그리고 상호 중요한 훈련이 있을 때는 참관을 해라, 이래서 교류협력을 확대를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 사람이 진짜 약속을 지키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군비 통제로 나아가서 평

화를 정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픈스카이를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기존으로 하던 항공을 다 닫아 버렸어요. 북한이 무슨 일을 벌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관심 밖으로 압니까, 의장님?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현재 군단급 제대에서 하던 UAV 제한이 되는 부분들은 상급 부대의 자산으로 표적을 조정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것도 또한 내가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군에서 그때 그런 핑계를 댔다가 제가 전술 토의나 기타 이런 걸 통해서 했을 때 답을 제대로 못했어요.

뭐냐 하면 그때 군에서 댄 핑계 중의 하나가 정찰·감시 비행 금지의 제한으로 정찰·감시 수단 제한을 무슨 신호 정보나 기타 다른 정보로 커버를 할 수 있다, 그게 거짓말인 게 증명됐어요. 왜냐하면 전반적인 북한의 기도는 통신 첩보나 또는 비군사적인 수단이나 또는 여러 가지로 인적, 인간 정보나 이런 것으로 파악이 가능해요. 그러나 전선에서 필요한 도발에 관련된 정보는 영상으로밖에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으로 확인돼야 돼요. 그래야 북한이 오는데 저게 전차인지 진짜 자주포로 공격을 하는 건지 이것을 눈으로 찍어 가서 그다음에 우리가 표적에 대한 대응을 한다니까. 군사적인 전투정보는 영상정보로 마지막 컨펌을 하는 겁니다.

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신원식 위원** 그러니까 무인기에 달려 있는 그 걸 대체할 수단이 없어요. 나머지 전략정찰 수단으로 그 잔잔한 무인기가 하는 걸 다 할 수 있어요? 커버가 다 돼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일단 표적 개수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신원식 위원** 여러 번 보고받았는데 그것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미쳤다고 무인기 하고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뭐 하러 개발합니까, 전략정보정찰 수단만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정치적인 이야기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다시 의장님이 전술토의를 해서 비행금지구역을 이대로 뒤도 전혀 문제가 없는가, 그러면 그동안 20km 이내에서 10km 이내에서 많이 했던 무인기, 군단급 사단급, 그다음에 금강도 차폐지역 때문에 지금 제대로 정보 수집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돈 앞으로, 경찰감시 전전지역 20km 이내에서 필요 없다 그러면 뭐 하러 돈을 투자해서 전력 개발하고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예산 다 깎으세요. 그게 필요 없고 무인기 필요 없으면 대대급 사단급 군단급 무인기 예산 다 깎고 그 돈으로 전략정보기 그런 것을 더 사세요.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UAV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특히 군단급 UAV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표적으로 전환시켰지만 적이 도발하거나 전시에 충분히 원래의 기능을 발휘해서 첩보 수집할 수 있습니다.

○신원식 위원 경찰감시에 대해서 다시 본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신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경기 화성시갑의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경기 화성갑의 송옥주 위원입니다.

저는 F-X 2차 사업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F-X 사업은 최신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해서 노후 전투기인 F-4나 F-5 등을 대체하고 미래 전장과 전투기 발전 추세에 맞춘 고성능 전투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송옥주 위원 당초 사업계획은 2024년까지 스텔스 전투기 60대를 일괄 구입하는 그런 계획이었으나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1차 사업은 40대가 먼저 구입되었고요 그 이후에 기종 변경 등을 논의하다가 2차 사업으로 20대에 대해서는 아직 계약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 F-5랑 F-4는 1970년대 중반부터 도입되어서 한 삼십 년 정도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요. 노후 전투기가 현재 한 100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투기 수명이 한 30년인 점을 고려하면 퇴역해야 할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 새로운 비행기 구입이 늦어지다 보니까 퇴역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F-4는 2019년

에 퇴역이 예정되어 있는데 2024년으로 연장이 됐고요 또 F-5는 2024년 퇴역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2029년으로 5년씩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후 전투기에 대한 사고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장님, 올해 노후 전투기 사건 사고에 대해서 몇 건이 일어났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두 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맞습니다.

그 두 번 중의 하나는 조종사가 사망을 한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노후 전투기 사고가 난 부분이 제 지역구인 화성에서 일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민가에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상탈출을 하지 않고 조종간을 잡고 있다가 순직한 고 심정민 소령에게 깊은 애도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군의 조사를 보니까 2000년 이후에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가 37건인데요 그중의 51.4%인 19건이 노후 전투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후 전투기가 그만큼 사건 사고와 조종사들의 사망, 생명까지 앓아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래서 이 F-X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노후 전투기 교체가 늦어짐으로 해서 군 작전수행능력뿐만 아니라 다른 기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가 현재 한 410대 수준인데요. 맞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송옥주 위원 합참이나 KIDA나 또 공군의 연구를 토대로 한 위게임 결과 우리나라 영공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한 430대의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알고 계시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송옥주 위원 현재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게다가 이 F-4나 F-5 전투기가 내용연수로 인해서 퇴역을 하는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 연말에는 한 380여 대, 퇴역을 하면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2024년에는 360여 대로 전투기 보유대수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2024년에서 25년이 되면 적정 전투기 대수, 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한 70여 대가 부족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각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하는데 의장님은 알고 계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알고 계시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요? 저희가 안 그래도 이런 대내외적인 많은 국가안보 위협도 있고 국민들의 불안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실은 내년 예산에 예산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예산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판단하시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주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지금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F-X 2차 사업은 최근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증대되는 것 또 장기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우리 전력이 노후된 것을 고려해서 이번에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확정됐고 검토가 됐고 지금 사업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적기에 전력화가 최단 시간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적인 부분에서는 현재 F-15K나 F-16 같은 전투기들에 대한 성능개량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기에 차질 없이 진행함으로써 전투기의 성능개량을 통해서 전반적인 우리가 공중작전의 우세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성능개선이나 그런 부분들 또 국산 전투기 도입이나 그런 부분도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한 대로 2024년에서 25년은 곧 이삼 년 내에 도래할 상황인데 그 도래하는 기간 동안에 전투기의 공백, 안보 공백을 잘 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러는데 이것을 알 수 있는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도 많이 걱정을 할 텐데요. 의장님께서 철저하게 꼼꼼하게 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이전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합참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는 2980억 원 플러스 알파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고 또 계획서를 보니까 2026년에 이전을 완성할 거다, 완공할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이전하는 데 비용이 플러스알파라는 예산 추계를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구체적이지도 않고 졸속적으로 추진되면 이것조차도 사실은 국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안 그래도 청와대 국방부로 이전하면서 그 여파로 인해서 국정 혼란이라든지 안보 공백이나 또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얼마나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그게 지금 얼마나 들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블랙홀 같은 상황인데 합참 이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시고요.

또 부지 이전과 관련해서도 남태령 수방사 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데 청사를 이전하거나 또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이 개발제한구역도 해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국토부라든지 서울시와 사전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답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역대 합동참모의장들께서, 11명이시지요?

1분만 더 주세요.

예비역 고위장성들이 청와대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해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기자회견 입장문을 내신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의장님께서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국민적인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지 연달아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존경하는 송옥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합참 이전 건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한 과업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합참의 기능과 역할이 잘 발휘되도록 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들의 근무 여건이나 생활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고 그래서 선행연구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선행

연구가 완료가 되면 그것을 기초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과 사업 규모가 될지 또 이전 시기를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합참에서 책임감 있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남태령으로 이전하면서는 개발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또 관련 기관과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통해서 사업의 규모와 방법들이 결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보 공백에 대한 것은 합참이 우리 군의 최고 군령 지위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옥주 위원** 의장님만 믿으면 돼요, 안보 공백?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감사합니다.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질의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의를 신청하신 분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시간은 답변시간 포함해서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규백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규백 위원** 의장님의 ‘침과대적’이라는 말씀처럼 그 정신으로 우리 군을 잘 이끌어 주시고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의장님의 여러 가지 안보 관과 철학 또 우리 군을 이끌 수 있는 군령의 체계, 자세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의장님,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불교의 최고 경전이 ‘반야심경’입니다. 반야심경에 보면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라밀다’라는 말은 인간이 살면서 이쪽 세계에 머물지 아니하고 저쪽 세계로 건너가라, 항상 발전해 나간다, 진보해 나간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당의 모든 위원님들이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제 개인적인 개인으로만 느끼는 소견이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9·19 군사합의 파기 방향으로 방향을 틀 거리를 잡지 않나 이런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9·19 군사합의하고 판문점합의는 다릅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분단의 비극을 끝장내자라는 것이 9·19 군사합의의 기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반도에 평화의 씨앗을 뿌렸다, 어쨌든 남북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로운 상태가 5년 동안 지속이 돼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맥락이 72년도 박정희 대통령 때 7·4 남북공동성명 그다음에 91년도 노태우 때 남북기본합의서 그다음에 2000년 김대중 대통령 때 6·15 남북공동선언, 2018년도 9·19 군사합의가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역대 대통령들의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어서 그 맥락에서 계속 유지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북한은 우리의 적국이면서 우리의 동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한반도에 살고 있는 한민족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역시, 북한이 이빠서가 아니라 역지사지의 그런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세, 협상의 자세가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하고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협상이 됩니까? ‘장사 상(商)’입니다. 하나 주고 하나 받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KO펀치 내릴 수가 없는 게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만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당 위원님들이 9·19 군사합의에 대해서 상당히 파기 쪽으로 흐름을, 방향의 틀을 잡지 않나 이런 생각이, 개인적인 소회였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군령의 최고책임자로서의 9·19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소신 있는 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9·19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는 앞서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접적지역에서의 공역에서의 충돌, 우발 충돌은, 위반은 한 2건 이외에는 없었고 대신에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전략적 도발에 대한 위협은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군사적 긴장 완화나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은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6·25 때 북한의 침략 속에서도 많은 피와 눈물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켰고 앞으로 우리 군은 특히 목숨을 걸고 그렇게 지켜 왔던 자유와 평화를 지켜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노력이 아니라 다른 노력들이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있어서 우리 군만큼은,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대비하겠다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안규백 위원 그러니까 북한이 NLL을 침범해서 천안함을 침공을 했달지 또 연평도를 포격했달지 민간인 포격 이런 부분들은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우발적 사고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으되,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민간인에 대해서 총격을 가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위원장 李憲昇 다 하셨습니까?

○안규백 위원 시간 지켜야지요.

○위원장 李憲昇 1분 더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배진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교 위원 의장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좀 더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조약과 관련해서는 국민께 공개하는 것이 현재 이 전환하는 데 있어서 국민의 힘도 모으고 그동안 많은 궁금증과 그 궁금증으로 인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요.

지금 COTP에 따르면 조건 1과 2는 핵과 미사일 대응 능력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거고, 이 평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세 번째 조건이 한반도 및 역내의 안보환경에 부합할 경우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조건이 너무 추상적이더라고요. 역내 안보환경은 남북간 문제일 거고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주변국 간의 관계, 더 넓게 가면 세계적인 안보환경 이렇게까지도 포괄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 안보환경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까지가 부합해야 전환한다는 것이냐……

얼핏 보면 상당히 합리적인 조건인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 이것은 전환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조건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 조건에 대

해서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조건 1·2는 우리가 전작권 전환하는 데서의 필수 선결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조건 3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배진교 위원님께서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 그런 제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이 도대체 어떤 것들이고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우리가 협의할 것인지를 좀 더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미 간에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그래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COTP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한미 상호 간의 협의하에 진행하겠다’ 이렇게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COTP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구체적인 목표 이런 것들이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야 사실은 전환에 대한 의지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도 특히 의장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깊은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추진해야 되는 입장에서 적어도 이제는 2단계 평가가 끝나고 나면 저는 3단계 조건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또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세 번째 조건에 부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객관적으로 이제 준비하겠다고 하신 만큼 구체적인 어떤 시기적 로드맵, 특히 윤석열 정부 내에서 향후 5년 내에 적어도 이 정도는 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한번 발표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의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지금 전작권 전환에 대한 시기는 미리 예측해서 설명드리기는 제한이 됩니다.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체계화 능력에 대해서 현재 한미 간의 합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계화 능력들이 확보될 수 있는 시점을 우리가 예상해서 그런 합리적인 시기가 결정이 되면 설명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진교 위원 다음 기회에 제가 더 추가적으로 질문드리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짧게 질문드리면 의장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지휘 목표에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강화’ 이렇게 명시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

재 한미 군사동맹은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에 기원을 두고 있고 또 확장 억제의 핵심은 핵무기를 비롯한 미국의 전략자산이잖아요. 만약에 한국형 3축 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라고 한다면 북한의 핵에 대응해서 우리 군 단독으로 어느 정도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도달하는 건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기본적으로 3축 체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미 측에서 제공하는 확장 억제 능력과 한국형 3축 체계가 통합돼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고 조금 더 우리가 계획돼 있는 것들을,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봤을 때 좀 더 전력에 대한, 능력에 대한 것들을 다시 검토를 해서 능력을 빠른 시간 내에 좀 더 많이 확충을 함으로써 우리가 북한 핵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더 많이 확보해 나가는 것 그것이 획기적인 강화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진교 위원 획기적 강화의 한 축으로 전략사령부도 지금 고민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렇습니다.

○배진교 위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계속적으로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한국군의 미래, 한국 방위를 위해서라도 독자적 대응 능력을 최우선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계획과 그런 준비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李憲昇 배진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저는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너무 큰 사안이라서 그래요.

우리 병사들의 핸드폰에 대해서 전시에는 전기간 수거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전시의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병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군사 보안이 지켜지는 가운데서 활용할 수 있는지는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전시라는 게 잠시 잠깐이 아니잖아요? 전시라는 건 전쟁을 얘기하잖아요. 비참한 1950년, 우리 전쟁 3년이 넘어갔잖아요. 장기간

에, 그때 그러면 병사들이 고립되는 거지요. 생각을 좀 해 보세요.

그리고 금년 1월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붙었잖아요. 전쟁이 났잖아요. 그게 지금 8개월째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양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병사들의 핸드폰을 다 수거했어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못하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러시아군에서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면서 작전보안에 좀 위배가 되고 또 그런 것들이 SNS에서 노출이 되면서 작전 간의 실패로, 과오로 연결되는 부분들도 제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걸 파악을 좀 해 보세요.

전쟁 중에 핸드폰이 없으면 전쟁을 못 해요, 현재 지금의 전쟁은. 이걸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음달에도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또 질의를 할 테니까 그때 업데이트된 그런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李憲昇 윤후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간사님이신 김병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설훈 위원님 먼저……

○위원장李憲昇 그럴까요? 설훈 위원님 먼저 하시렵니까?

○설훈 위원 예,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李憲昇 설훈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훈 위원 예.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현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데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전개될 현대전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참고자료로 대단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군을 파견할 수는 없지만, 군대를 파견할 수는 없지만 그 전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세우지 않고 있다면 빨리 이 상황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를 파견할 수는 없지만 상황은 파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전쟁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현대전이 어떻게

홀러갈 거다, 한반도에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대입할 수 있는, 대응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나는 합참에서 여기에 대한 대응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너무 늦었다고 봅니다.

안 했지요? 아무런 대응 안 했을 거라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법들 생각해 가지고 좀 대응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답변을 해 보십시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설훈 위원 예.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국방부 차원에서 지금……

○설훈 위원 잠깐만, 군사안보에 관한 얘기는 안 해도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답변해도 괜찮고, 내가 말하는 질문의 요지는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관련된 전문 분석은 지금 체계적으로 과제화해서 관련된 기관과 협업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솔직히 이야기해서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는 의장 생각으로는 이게 잘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노력하겠나?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설훈 위원 판에 박힌 대답을 하시네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것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 그다음 정부도 가능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입니다. 이걸 잘 아실 거예요. 미중이 지금 세계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는 미국이 결코 전시작전권을 우리한테 주려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미중이 서로 다투지 않을 때는 넘겨주려고 했지요. 적극적인 자세로 가져가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해 가지고 전시작전권을 받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이것 바보 같은 생각들을 했다, 그때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가져왔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전작권 전환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작 전작권을 우리가 회수하고 우리가 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이게 자주국방이에요. 박정희 대통령이 자주국방 해서 결국은 아주 비참한 상황도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했던 자주국

방이라는 개념 자체는 옳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야 돼요.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켜내야 합니다. 이 개념에서 전작권을 우리가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국제정세 속에서의 상황 때문에 안 됐어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의 판단 미숙 때문에 못했고, 지금이라도 이것을 할 의지를 군인들이 가져야 한다고 봐요. 그게 진짜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군인이라 생각해요. 그게 어렵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압니다. 국제정세와 흐름 속에서 이게 참 어렵다, 그러나 군인은 적어도 전작권에 대한 확실한 자세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지금 합참의장을 하고 계시니까 무기획득 사업에 대해서는 의장이 책임지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보고-Ⅲ 배치-Ⅱ 사업 이게 지금 난항에 처해 있지요? 알고 계실 거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현대조선입니까? 현대조선이 이것 하도록 예약은 돼 있는데 현대조선이 현실적으로 이것 못 한단 말이에요, 사이즈가 커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하려면 할 수 없이 대우조선으로 다시 가야 되는 것 같은데 대우조선 쪽에서는 환율 뛰고 그랬으니까 1조 정도 예상돼 있던 게 1조 4000억까지 부른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있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와 또 방사청과 협업을 해서 제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그 진행되는 상황을 본 위원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십시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설훈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1조면 되는 게 1조 4000억까지, 물론 환율 등등으로 독점 체제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1조 4000억씩 들여 가지고 장보고-Ⅲ 배치-Ⅱ 사업을 해야 되느냐? 본 위원은 좀 회의가 있어요. 지금이 꼭 이 사업을 할 때인가, 좀 이따가 다른 사업을 다 하고 해도 충분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러테면 우리 군인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 많아요. 그것부터 해결하고 무기를 획득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순위가 바뀌어 있

어요. 어마어마한 돈 1조 4000억이 들어가는 이 돈을 왜 꼭 그렇게, 장보고-Ⅲ 배치-Ⅱ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근본적인 회의가 있어요. 하지 말자는 건 아니에요. 한참 뒤에 해도 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서둘러서 하겠다는 게 정말 예산 운영에 맞는 자세냐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 사업을 좀 면밀히 보시고 본 위원에게 보고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검토하겠습니다.

○설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병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주 위원 의장님, 합참이전 TF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중간결과를 국정감사 때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대통령실 줄속 이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얼마나 드는지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으니까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국정감사 전까지 어느 정도 보고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되는 것까지만 대략적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합참의장님은 요전에 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셨습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병주 위원 2년 정도 가까이 했지요, 보직을?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병주 위원 그래서 연합사 부사령관 때 보니까 한미군사동맹을 아주 공고히 하고 한미 간의 관계를 아주 공고하게 잘하셨던데 어떻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동맹발전을 위해서 또 연합방위태세 또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미 측과 소통을 하는 가운데 체계적으로 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서 그 당시 한미동맹이 공고했다고 보지요, 연합사 부사령관 시절에?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 늘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김병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보면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 굴종 아닌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겠다’ 또 ‘민주당 정권에서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하겠다’, 대통령 돼서도 ‘약화된 한미동맹을 정상화하겠다’, 지금 연합사 부사령관은 한미동맹의 가장 핵심에 있던 자리에 2년 동안 있으면서 어느 때보다도 한미동맹이 공고하다고 했는데 한미동맹이 무너져서 재건하겠다라는 윤석열 그 당시 대통령 후보자,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평가와 인식에는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아마 답변하기가 곤란하실 테니까.

그 출발점부터 잘못되니까 그다음 대응도 잘못된 거지요. 지금 한미동맹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한미동맹을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뒤통수를 맞는데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런 것들이 통과되고 우리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한미정상회담에 가서 풀고 왔으면 좋겠어요.

부사령관님으로 계실 때 한미연합훈련 잘하셨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병주 위원 두 번 다 잘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그렇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리고 한미연합훈련을 보면, 국방백서에 보면 문재인 정부 이전보다도, 2020년, 19년, 20년 이럴 때 보면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소규모 훈련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지요. 맞지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병주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의 인식은 그야말로 경악할 정도의 인식에 문제가 있었어요. 매년 연습·훈련 안 하는 군대 봤습니까?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군사안보 동맹인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례적인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데 그 자체를 안 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하고 있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대통령이 되고도 이런 인식에 변화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진단부터 잘못되다 보면, 진단이 잘못되면 대응책은 바로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참의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대통령께 건의도 하고 알려 드리고 보고도 좀 하세요. 그렇게 하시

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연합훈련 관련해서는 소규모 훈련들을 조정해서 시행이 됐지만 대규모 훈련들은 제한이 되었던 것이고……

○김병주 위원 아니지요. 대규모 기동훈련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제한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워 게임 기법을 적용한 것은 그대로 됐고 단지 코로나로 인해서 장소를 두 군데로 분리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부사령관 할 때 하셨잖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영함 통신두절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 그러한 문제점 분석해 봤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김병주 위원 어떻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일단 근무 기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시스템 절차상의 문제도 보완할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여기……

○김병주 위원 합참의 문제는 뭐예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합참에서는 긴급상황보고 목록에 작전 중인 함정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향해 중인 모든 함정들이 문제가 발생되면 보고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보고 목록을 수정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래요. 합참이 비록 태풍으로 피항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바다에 나갔을 경우는 합참사항으로 인지하고 보고체계를 해 주시고.

시스템상으로는 MOSCOS-I 같은 경우는 계속 사각지점이 생기잖아요. 이런 통신 사각지점이 생기는 배가 지금 몇 척입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20여 척 됩니다.

○김병주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니까 133척이예요. 이걸 개선하는 데에는, MOSCOS-II로 교체하는 데에는, 25년까지 교체되는 계획인데 이것을 좀……

1분만 더 주세요.

조기에 좀 교체를 해야 이런 사각 없이 바다에 나가서도 우리 구축함이라든가 여러 함정들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통신제한에 대한 것은 운영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현재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구조적인 문제는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 해군본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님 리더십에서 취약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 강점도 있고 단점도 있잖아요. 단점이나 취약점, 보완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 자신을 잘 평가해야 이것이 앞으로 합참의장을 잘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저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실천을 통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주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1분만 더 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 리더십이나 이런 것을 체크해 보니까 합참의장은 전략 개념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한데 치명적인 단점이 저는 하나 있다고 봐요. 너무나 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예요. 너무나 강압적인 리더십, 좋게 얘기하면 강한 리더십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뭐라고 할까, 강압적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지금 합참에 있는 간부들이 대단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듣고 있어요. 물론 합참의장으로서 열심히 하고 철두철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럴 것이라고 이해는 하지만 앞으로 합참 내 참모들과 또 군 내부에서도 소통을 좀 더 자주 하시고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유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는 합참의장으로서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예, 적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김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김병주 위원 예.

○위원장 李憲昇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족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는 아무도 안 계시고 저만 있네요.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 동안에 질의를 못 했으니까 제 이름으로 서면질의할 테니까……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확인해서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시간을 주시면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李憲昇 예, 제 말씀 마치고.

제가 제출한 서면질의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서를 작성해 가지고 조속히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서면질의 및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참의장님, 설명하실 것……

○합동참모의장 김승겸 아까 국내 개발 합재기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는 가운데 현재 경향모가 아니라 중향모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이것은 연구용역이 나와서 최종적으로 어떤 절차에서 결정이 되면 향모의 변경사항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李憲昇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오늘 회의는 제21대 후반기 국회(정기회) 첫 번째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입니다.

정기국회는 법률안 등 일상적인 안건 처리 외에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정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심의하는 등 국정 운영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제21대 전반기 국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보다 충실한 국정감사와 예산안 및 법률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리 국방위원회가 어떠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가 향후 제21대 후반기 국방위원회의 성과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법률안 심사 (7인)	◎김병주 설 훈 송갑석 송옥주	더불어민주당(4)
	성일종 임병헌 한기호	국민의힘(3)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예산결산 심사 (8인)	김영배 안규백 윤후덕 정성호	더불어민주당(4)
	◎신원식 임병헌 한기호	국민의힘(3)
	배진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청원심사 (5인)	◎정성호 김병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3)
	김기현	국민의힘(1)
	배진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5인)

김 기 현	김 병 주	김 영 배	배 진 교
설 훈	성 일 종	송 갑 석	송 옥 주
신 원 식	안 규 백	윤 후 덕	이 헌 승
임 병 헌	정 성 호	한 기 호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병 주
전 문 위 원	이 옥 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합동참모본부

의 장	김 승 겸
전략기획본부장	이 영 수
정 보 부 장	원 천 희
작 전 부 장	강 호 필
전략기획부장	김 수 광
민 군 작 전 부 장	정 덕 성
전작권전환추진단장	정 진 판

【보고사항】

○의안 회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 발의)

(2022. 8. 25. 민홍철·전혜숙·김윤덕·김희재·설훈·임종성·강득구·강선우·이학영·전용기·조정식 의원 발의)

8월 26일 회부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

(2022. 8. 31. 이용호·구자근·박덕흠·성일종·엄태영·장동혁·정우택·정운천·홍문표·황보승희 의원 발의)

9월 1일 회부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2022. 9. 2. 김민기 · 김승남 · 김영배 · 백혜련 ·
송기현 · 이성만 · 이용빈 · 인재근 · 임호선 ·
최혜영 의원 발의)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2022. 9. 2. 김민기 · 김승남 · 노웅래 · 백혜련 ·
송기현 · 이성만 · 이용빈 · 인재근 · 임호선 ·
최혜영 의원 발의)

2023년도 예산안**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2023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 2022. 9. 2. 정부 제출)

이상 5건 9월 5일 회부됨

**워싱턴 추모의 벽 건립 기념과 이를 계기로 한
한미동맹 지속 발전 촉구 결의안**

(2022. 9. 5. 이현승 · 강기윤 · 권명호 · 김기현 ·
김도읍 · 金炳旭 · 김병주 · 김상훈 · 김석기 ·
김성원 · 김예지 · 김정재 · 김형동 · 김희국 ·
박대출 · 박성민 · 박형수 · 배현진 · 서범수 ·
서병수 · 서정숙 · 설훈 · 성일중 · 송석준 ·
송언석 · 신원식 · 안규백 · 안철수 · 양금희 ·
양정숙 · 윤두현 · 윤상현 · 윤재옥 · 윤주경 ·
윤창현 · 이명수 · 이양수 · 이용호 · 이원욱 ·
이종배 · 이종성 · 이주환 · 임병현 · 임이자 ·
전봉민 · 전해철 · 정경희 · 정성호 · 정희용 ·
조경태 · 조명희 · 조해진 · 최영희 · 최형두 ·
허은아 의원 발의)

9월 6일 회부됨